

#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27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15년 11월 4일

##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류활동, 공연예술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세종문화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1) 대상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 2) 관련법령 및 조례
  - 세종문화회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 서울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 서울디자인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나. 출연의 필요성

대 상 기 관	출연의 필요성
세 종 문 화 회 관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
서 울 문 화 재 단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나. 주요 사업

대상 기관	주요 사업
세종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문화회관의 운영</li> <li>-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li> <li>-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li> <li>-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li> </ul>
서울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li> <li>-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li> <li>-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li> <li>-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li> <li>-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li> </ul>
서울시립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활동 수행</li> <li>-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li> <li>-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li> </ul>
서울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진흥 사업</li> <li>-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li> <li>-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등</li> </ul>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규정임.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 규정에 대해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는 언제까지인지 등 여러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10월 19일자 공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를 통해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출자·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한다고 알려왔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류활동, 공연예술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4개 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는 해당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정관으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조례 어디에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과 별개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재단(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참고로 제264회 정례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 의회에 제출된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표와 같음.

### 제264회 정례회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현황

	의안명	대상기관	소관 위원회
1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경제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건복지
3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자치
4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 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획경제
5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보건복지
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교통
7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문화체육
8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
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자치
10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SH공사	도시계획

#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해석 기준 통보

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자치단체 결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해석기준을 통보하니,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즉시 전파)

붙임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1부, 끝

###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장윤경 서기관 손연석 차관정희과장 연립 10/10  
이우준

발조자 행정사무관 이경민

시합 재공공청과-8863 ( 2016.10.19. ) 접수 예산담당관-12588 ( 2016.10.20. )

우 0317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세종트)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619 / 전수 02-2100-4511 / yk0828@moi.go.kr / 금개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 '16회계년도부터 적용)
- 출자·출연 **사전의결**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해석기준**을 정립하여 자치단체에 통보

### □ 질의 및 검토의견

- **(질의1)**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감사원지적 '11.3)

- **(질의2)**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다만, 지방의회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

○ (질의3)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질의4)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

#### < 지방재정법 내용 >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